

[ ] 전입 [ ] 재등록신고서(  재외국민  해외체류자 )

※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 번호		신고일		
		년	월	일
전에 살던 곳	구분	[ ] 세대 모두 이동 [ ]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[ ]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		
	세대주	성명	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(연락처)	
	주소	※ 현재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작성		
현재 사는 곳 (이사한 곳)	구분	[ ] 세대 구성 [ ] 다른 세대로 편입 [ ] 세대 합가(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)		
	세대주	성명 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	연락처
	주소	※ 주택의 이름, 동 번호 및 호수까지 작성 (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)		

\* 신고 대상자 (총 명) ※ '전입자 연락처(휴대전화번호)'는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한 전입신고 시에만 작성합니다.

전입자 (재등록자)	세대주와의 관계	성명	영주 국가 (지역, 재외국민만 해당)	체류 자격 (재외국민만 해당)	전입자 연락처 (휴대전화번호)	전입자 확인 (서명 또는 인)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
전입 사유 (※주된1가지)	[ ] 직업 (취업, 사업, 직장 이전 등)	[ ] 교육 (진학, 학업, 자녀 교육 등)
	[ ] 가족 (가족과 함께 거주, 결혼, 분가 등)	[ ] 주거 환경 (교통, 문화·편의 시설 등)
	[ ] 주택 (주택 구입, 계약 만료, 집세, 재개발 등)	[ ] 자연 환경 (건강, 공해, 전원생활 등)
	[ ] 그 밖의 사유 ( )	

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,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, 제23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([ ] 전입 [ ] 재등록) 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
	연락처	재외국민(또는 해외체류자) 본인과의 관계

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
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1.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) 2.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(해외체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
--------------	---

※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위임장

「주민등록법」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한 사람 (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본인)	성명 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재외국민 본인 또는 해외체류자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이민 출국 또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, 17세 이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,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.(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).
-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하였거나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며,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,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.(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).
- 재외국민(해외체류자)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(해외체류자)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'위임장' 칸에 재외국민(해외체류자) 본인의 위임을 받고, 재외국민(해외체류자) 본인의 주민등록증·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, 재외국민(해외체류자) 본인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(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「형법」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).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,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·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,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.
  -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,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37조 및 제40조).
- 거짓 전입,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.
- 전입 사유 칸은 「통계법」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,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,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- 우편물 전입지 전송(배달)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(배달)하거나,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.
  -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·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인터넷 우체국(www.epost.go.kr)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인터넷 우체국(www.epost.go.kr)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신고인은 '신고인'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.
-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(前)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고, 그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 다만,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후견인)의 확인을 받고,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
- 전입자[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후견인)을 말합니다]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, 신고인이 전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그 전입자의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을 작성합니다.
- '전입자 또는 재등록자' 칸의 '세대주와의 관계' 칸에는 전입지(재등록지)의 세대주와 전입(재등록)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.
- '영주 국가' 칸에는 영주 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( )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.
- 체류 자격은 영주, 가족 체류, 유학, 취업, 투자, 상용(商用), 공무, 기타(자세한 내용)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.
- 세대주 또는 신고인의 '연락처'는 전입신고된 내용에 대한 관할 읍·동장의 사후확인 등에 이용되며, 주민등록표 등·초본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.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'전입자 연락처(휴대전화번호)'는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만 작성하며, 연락처 기재 희망하지 않는 전입자의 경우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자 확인(서명 또는 인)과 함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
  - \*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상황에 대한 전입자 본인 확인(문자메시지 링크 전송)을 위해 전입자 연락처 기입이 필요하며, 수집된 연락처는 전입자 본인 확인이 완료된 후 폐기됩니다.
-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 또는 준주택인 경우에 '주택의 이름, 동 번호 및 호수(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)'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,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
  - \* 다만, 「도로명주소법」에 의한 상세 주소(동, 층, 호)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.

※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.

우편물 전입지 전송(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)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

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(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,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).

※ 수수료 등은 「우편법」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■ 제공 항목: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(휴대전화 번호)

○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:

○ 신청인 전화번호: ☎ - - (휴대전화: - - )

[ ]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( ) 신고서 접수증

\* 신고서 및 학령 이동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,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.